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2. 14) 상정
-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2. 14)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김 종 대)

가. 제안이유

-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여 예술감독의 지휘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단체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내 음악계를 주도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향악단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시립합창단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러스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2조)
- 사무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4항)
- 부천필, 부천필코러스의 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사무국장의

-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기간 만료시 전형위원회의 적격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의 재위촉에 관한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1조제4항 신설)
 - 단원이 정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7호 신설)
 - 무료 입장권은 유료 입장권의 10퍼센트 이내로 발행하고, 필요시 단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통합 운영시 공연 횟수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 전체적으로 약 8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
○ 사무국장제 도입 등 전체적으로 증원이 되는 인력은?	○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당초 9명에서 2명이 증원이 된 11명임.
○ 해촉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권한 행사시 악용의 우려가 제기 될 수도 있음.	○ 위원회 및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심의 등을 통하여 해촉 관련 사항 등이 심의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는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됨.
○ 사무국 설치 등 인력의 증원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정한 사례로 보여 지는데?	○ 통합의 부분은 예술단에 한정된 사항이며, 사무국 인력증원은 현재 보다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있음

나. 반대토론

없음 있음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소수의견

- 통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무국 인력의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사무국장제도는 신설하되, 현재 9명의 인력을 유지토록 하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해촉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운영상 권한의 남용 및 악용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현행조례와 같이 하도록 수정의견 제시.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58호
의결 년월일	2005. 12. 23 (제123회)

제안년월일 : 2005. 12. 14.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통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무국 인력의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사무국장제도는 신설하되, 현재 9명의 인력을 유지토록 하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해촉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운영상 권한의 남용 및 악용의 소지 우려가 예상이 되는바, 현행 조례와 같이 하도록 수정.

2. 주요골자

- 사무국은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인의 간부단원과 8인의 팀원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 기획홍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였으나, '8인의 팀원'을 '6인의 팀원'으로 수정 (안 제3조제4항)
- '단원이 정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나, 현행과 같이 하도록 하고 삭제함. (안 제12조제7호)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4항중 ‘8인의 팀원’ 을 ‘6인의 팀원’으로 한다.

안 제12조중 제7호‘ 정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해촉 사유에 해당된 자’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현행	개정안	수정안
<p>4. 청소년 관현악단은 지휘자 1명의 간부 단원과 비상임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도강사는 <u>교향악단</u>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p> <p>5. 청소년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비상임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성악 지도는 <u>합창단</u>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시장은 예술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1. <u>교향악단, 합창단</u> 지휘자, 무용단의인무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 중 지도력이 탁월하고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p> <p>④각 예술단체는 예술단 사무국이 총괄 관리한다. <u>사무국은 공연기획팀장, 홍보섭외팀장, 운영관리팀장</u>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3명, 악보담당 2명, 악기계 1명으로 구성한다.</p>	<p>4. ----- ----- ----- ----- <u>부천필</u> ----- -----</p> <p>5. ----- ----- ----- ----- <u>부천필코러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부천필, 부천필 코러스의 지휘자</u> ----- ----- ----- -----</p> <p>④----- ----- ----- ----- <u>사무국은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인의 간부단원과 8인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공식인 경우 기획홍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p>	<p>4. ----- ----- ----- ----- <u>부천필</u> ----- -----</p> <p>5. ----- ----- ----- ----- <u>부천필코러스</u>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 -----</p> <p>1. <u>부천필, 부천필 코러스의 지휘자</u> ----- ----- ----- -----</p> <p>④----- ----- ----- ----- <u>6인의</u> ----- -----</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2조(단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생략)</p>	<p>제12조(단원의 해촉)-<u>각호의 어느 하나</u>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정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해촉 사유에 해당된 자</u></p> <p><u>8. (현행 제7호와 같음)</u></p>	<p>제12조(단원의 해촉)-<u>각호의 어느 하나</u> -- ----- -----.</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u><삭제></u></p> <p><u>7. (현행과 같음)</u></p>

[수정안 포함]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향악단, 합창단”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이라 한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코러스(이하 “부천필코러스”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중 “교향악단”을 각각 “부천필”로, 동항 제2호 및 제5호중 “합창단”을 각각 “부천필코러스”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중 “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를 “부천필, 부천필코러스 지휘자”로 하며, 동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인의 간부단원과 6인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 기획홍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2항중 “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를 “부천필, 부천필코러스의 지휘자”로 하고, 동조 제3항 단서외의 부분중 “명예직으로 한다”를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무국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 운영한다.

제7조제1항중 “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를 “부천필, 부천필코러스의 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사무국장”으로,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3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시 전형위원회의 적격심의를 거쳐” 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교향악단”을 “부천필”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의 재위촉에 관한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의 종류는 <u>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u>(이하 “<u>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u>”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각 예술단체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교향악단</u>은 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제1수석단원 14명, 제2수석단원 14명, 일반단원 67명이내로 구성한다. 단, 제1수석단원의 결원이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량이 우수한 단원중에서 제1수석 대행자를 둘 수 있다.</p> <p>2. <u>합창단</u>은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4명, 차석단원 4명, 일반단원 51명이내로 구성한다.</p> <p>3. (생략)</p>	<p>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 -----<u>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u> (이하 “<u>부천필</u>”이라 한다), <u>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코러스</u>(이하 “<u>부천필코러스</u>”라 한다),-----.</p> <p>제3조(구성) ①----- ----- ----- -----.</p> <p>1. <u>부천필</u>----- ----- ----- ----- ----- ----- ----- ----- ----- -----.</p> <p>2. <u>부천필코러스</u>----- ----- ----- -----.</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4. 청소년 관현악단은 지휘자 1명의 간부단원과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도강사는 <u>교향악단</u>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p> <p>5. 청소년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비상임단원 6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성악지도는 <u>합창단</u>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p>	<p>4. ----- ----- ----- -----<u>부천필</u>----- -----.</p> <p>5. ----- ----- ----- -----<u>부천필코러스</u>----- -----.</p>
<p>② (생략)</p> <p>③시장은 예술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교향악단, 합창단</u>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중 지도력이 탁월하고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p>	<p>1. <u>부천필, 부천필코러스</u>의 지휘자----- ----- ----- -----</p>
<p>④각 예술단체는 예술단 사무국이 총괄 관리한다. <u>사무국은 공연기획팀장, 홍보섭외팀장, 운영관리팀장</u>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3명, 악보담당 2명,</p>	<p>④----- -----<u>사무국은</u> <u>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운영관리팀장</u> 각 1인의 간부단원과 6인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p>

현행	개정안
<p><u>악기계 1명으로 구성한다.</u></p> <p>제4조(단장등의 직무) ① (생략)</p> <p>② <u>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u></p> <p>③ <u>예술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술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u> 단, 업무의 추진에 있어 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p> <p><신설></p> <p>제7조(위촉기간) ① <u>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 위촉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u></p>	<p><u>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 기획홍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4조(단장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부천필, 부천필코러스의 지휘자</u>----- ----- ----- -----.</p> <p>③----- ----- ----- ----- -----<u>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u>----- ----- -----.</p> <p>④ <u>사무국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 운영한다.</u></p> <p>제7조(위촉기간) ① <u>부천필, 부천필코러스의 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사무국장,</u>----- -----<u>3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시 전형위원회의 적격심의를 거쳐</u>-----.</p>

현행	개정안
<p>②·③ (생략)</p> <p>제10조(전형위원) ① (생략)</p> <p>②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u>교향악단</u>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4명이상 10명 이내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전형위원)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부천필----- ----- ----- .</p>
<p>③ (생략)</p> <p>제11조(전형방법) ①~③ (생략)</p> <p><신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전형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u>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의 재위촉에 관한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12조(단원의 해촉)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1.~ 6. (생략)</p>	<p>1.~ 6. (현행과 같음)</p>
<p><신설></p>	
<p><u>7.</u> (생략)</p>	<p>7.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7조(입장권 발행) ①(생략)</p> <p>②무료초대권은 유료입장권 발행수의 10퍼센트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③ (생략)</p>	<p>제17조(입장권 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